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·학생 행복 조례 폐지조례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965호
2. 발 의 자 : 최유희 의원
3. 발의일자 : 2023. 7. 27.
4. 회부일자 : 2023. 8. 21.

II. 제안이유

- 본 조례는 행복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학교 구성원의 행복 중심 정책추진을 목적으로 2021년에 제정되었으나 이후 관련 사업 추진 및 수립·시행된 계획이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는 상태임.
- 이에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.

III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·학생 행복 조례」를 폐지함.

IV. 참고사항

1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2. 입법예고(2023. 8. 24. ~ 8. 28.) 결과 : 의견 없음.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폐지조례안은 2023년 7월 27일 최유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965호로 발의되어 2023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폐지조례안은 관련 사업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화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·학생 행복 조례」를 폐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·학생 행복 조례」는 학생 및 학교 구성원들의 행복감을 높임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 7월 제정·공포되었으며,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2022년 7월 시행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동 조례는 교육감이 학교·학생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(제4조)

학교·학생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·보급하며 지표를 지수화한 학교·학생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(제9조).
-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 제정 이후 조례에 따른 학교·학생 행복 증진 관련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¹⁾ 이를 통해 볼 때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동 조례의 필요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

1) 서울시의회 요구자료(요구번호 1240) 「조례 제정 이후 조례에 의해 추진된 사업 현황 및 수립·시행된 계획」에 대해 「해당없음」으로 보고함(민주시민생활교육과-10523, 2023.5.25.).

사료됩니다.

○ 동 조례의 제정을 수용한 후 서울시교육청이 사업 추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의회의 입법권 훼손은 물론 업무 해태에 기인한 것이라 사료되는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2681, 2023. 8. 22.).

□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·학생 행복 조례 폐지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입법조사관	김한수 02) 2180-8269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